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799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발 의 자: 박춘선, 이종태 의원(2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남궁역, 남창진, 유만희,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이영실, 이은림,
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
허·훈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개발사업의 증가와 학교 주변에서의 싱크홀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
- 이에 AI, 빅데이터, IoT 등 신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사고 예방 조항을 신설하여, 실질적인 교육안전 강화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「교육기본법」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함. (안 제1조 개정)
- 나.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(IoT)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명시함. (안 제10조 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교육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5”를 “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6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 등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교육기본법</u>」 제17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,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.</p> <p>제10조(안전사고의 예방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교육기본법</u>」 제17조의6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안전사고의 예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 등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 |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(목적)에서 규정에 인용된 「교육기본법」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(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5 →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6)하고, 조문을 정비 하며,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AI, 빅데이터, IoT 등 신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, 실질적인 교육안전 강화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임
- 신설 및 수정조문 검토결과, 서울특별시 소재의 각급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하는 경우,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(안전총괄담당관, 학교안전팀, 안전기획팀, 통학·안전관리팀)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